
경기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목 차

I. 개 요	1
II.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해설	2
■ 제1호(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항)	2
■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3
■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 제4호(재판·수사 등에 관한 사항)	4
■ 제5호(감사·감독·계약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4
■ 제6호(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에 관한 사항)	5
■ 제7호(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6
■ 제8호(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7
III. 경기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8
별첨. 관계법령 발췌, 정보공개청구 서식	14

경기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I 개 요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입니다.
- 기관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효력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대외적 기속력이 없으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여부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 안내

온라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제출
오프라인	기관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 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 청구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항]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령 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6. 1. 13. 204두12629)

□ 주요 비공개 정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된 비밀 및 관련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 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 (대법원 206. 1. 13. 204두12629)

□ 주요 비공개 정보

-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 관련 각종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문서, 예비군 관련 각종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 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 비공개 정보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등)에 대한 도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방재·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비위행위, 진정, 공무원범죄, 공익신고 등 각종 조사사안의 관련자 및 제보자

제4호 [재판·수사 등에 관한 사항]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주요 비공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계약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 비공개 정보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 관련 정보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특정 수험생의 답안지 채점위원 등)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주관식, 논술, 면접 시험 채점결과표 등)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시험공고 전 시험실시 계획 등)

○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 또는 건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에 관한 사항]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령 취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 주요 비공개 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등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근무 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및 연가·병가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제7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령 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13101)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 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대법원 2009두19201, 대법원 2010두24647, 중앙행정심판위2012-24651, 대법원 2007두1798)

□ 주요 비공개 정보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제8호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 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주요 비공개 정보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사항 등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의사항, 학교부지 선정 관련 계획서 및 검토자료

본 자료는 기관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여부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통지 가능)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관련부서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제1호	감사관
감사	비위행위, 진정, 공무원범죄, 공익신고 등 각종 조사사안의 관련자 및 제보자	제3호, 제6호	감사관
	각종 감사 관련 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등 증빙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민원인 및 피감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민원	진정·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원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호	총무과, 운영지원과
인원/시설보안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암호자재 현황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호	총무과, 운영지원과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제3호	
정보보안	본청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주소 할당현황 포함)	제2호	교육정보담당관
	본청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제2호	
	본청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포함)	제2호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제6호	
	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명단	제6호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관련부서
교육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 (통계법 제33조)	제1호	교육정보담당관
비상계획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호	총무과, 운영지원과
	총무계획, 을지태극연습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호	운영지원과
성과평가	성과계약 및 성과평가 관련 서류(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제5호	정책기획관
조직관리	조직관리 및 정원조정 관련 내부검토 사항	제5호	행정관리담당관
공무원단체	공무원단체와의 교섭·협의에 관한 서류	제5호	학부모시민협력과
교원인사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 관련 자료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6호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제5호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제5호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 및 관련 자료	제5호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제5호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보유하는 각종 개인신상정보	제5호, 제6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제5호	
	교장공모제 심의서류	제5호	
	교감자격 면접시험, 수석교사 임용(재심사) 문제지, 채점기준, 평정표, 평정결과, 출제위원명단, 평가위원명단	제5호	
	경기도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제5호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관련부서
교원인사	교육전문직 전형 문제지, 점수 및 등수, 채점기준 및 채점표, 각종 위원 명단 등 관련 자료 일체	제5호	교원정책과
	교육장, 장학(교육연구)관 추천(공모)제 심사에 관한 사항	제5호	
	교원 성과상여금 심사서류 및 회의록	제5호	교원역량개발과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세부시행계획서, 출제.채점.평가위원(면접관 등) 명단 논술형(서답형포함) 채점기준표, 모범답안 및 문항별점수	제5호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석차 및 성적대장	제5호	
각종 연수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제6호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 개인신상정보	제6호	교원역량개발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인별 평가결과자료	제5호	
지방공무원 인사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서 등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자료	제6호	총무과, 운영지원과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단, 본인에 한하여 공개)	제5호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5호, 제6호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심사서류 및 회의록	제5호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보유하는 각종 개인신상정보	제5호, 제6호	
	병역사항 신고	제6호	
지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충원, 계획서, 문제지 등)	제5호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관련부서
사립학교 인사	사립교원 공립 특별채용시험 세부시행계획서	제5호	학교지원과
	사립학교 교사 신규임용 위탁시험 세부시행계획서, 문제지	제5호	
	사립교원 임용(징계)보고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학교법인	학교법인 임원대장, 임원 신원조사 및 취임 승인	제6호	학교지원과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관련 사항	제6호	
	학교법인 재산·회계 관리 조사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등) 처분서	제7호	
	학교법인 정상화 관련 사항	제7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출 안건	제7호	
교육공무직원 운영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회 회의록	제5호	노사협력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제5호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제5호, 제6호	
교권보호	고발요청 사안 관련 서류, 고발 서류, 자문 서류, 증거자료, 처분서	제4호	교원역량개발과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조정신청서, 관련 자료 일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제5호	
	경기도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관련 서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16조)	제5호	
성인권보호	성희롱·성폭력 사안 보고서류 등 개인신상정보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제6호	학생생활인권과
	과태료 심의관련 위원 명단, 심의서류 및 회의록	제5호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관련부서
학교폭력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참여 위원 명단, 심의서류 및 회의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호	학생생활인권과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 제5호	
	재심 청구서, 결정서 등의 개인정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 제6호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제1호, 제6호	
재판/소송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제1호	행정관리담당관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제4호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제1호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소청심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제5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제6호	
세입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금융기관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재무담당관
경리	직원 급여 관련 사항	제6호	재무담당관, 운영지원과
	계약상대자의 시공실적, 신공법, 보유기술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	제7호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관련부서
공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사용허가, 대부 관련 개인신상정보	제6호	재무담당관
교지조성	학교부지 편입보상 관련 감정평가내역, 손실보상대상자 및 이해관계인 신상정보	제6호	학교설립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사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의사항	제8호	
	학교부지 선정 관련 계획서 및 검토자료	제8호	
학생보건	학생 감염병 관리 관련 감염병 감염학생 명단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	제6호	학생건강과
고입관리	고등학교 입학시험 학교별, 개인별 성적 및 석차명부	제5호	미래교육정책과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입시 개인별 배정결과	제6호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전·편입학 학생개인별 결과	제6호	
	경기도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서류, 심사위원 명단, 회의록	제5호, 제6호	
대입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제5호	미래교육정책과

〈별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별첨 2> 정보공개 청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1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임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small>※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small>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구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

유의사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